

 <p>교육부</p>	<p>보도자료 2020. 8. 10.(월) 배포</p>	<p>힘내라 대한민국</p>
--	---	-----------------

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◆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8월 11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(2020.5.28.)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,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*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·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.
 - *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(휴업 및 휴원 명령)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.
-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*를 마련하고,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.
 - *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신설(2020.6.23.)
 - 그러나,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*되면서, 초등학교병설유치원(국·공립 유치원의 약 90%)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.

※ 초등학교 온라인개학 4.16~ vs. 유치원 개학 5.27

- 이로 인해 흑서기·흑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,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,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.
-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,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·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말하고,
 - “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,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수업일수 등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2조(수업일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----- ----- ----- 학년도 도가 시작되기 ----- 보고해야 ---.</p> <p>1.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수업일수의 10분의 1</p> <p>2. 법 제31조제1항·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: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